
공정거래 CP 리스크평가 운영지침

제 · 개정 일자 : 2026. 5. 18.

제 · 개정 번호 : 02

2023. 11. 1. 제정

2025. 7. 24. 1차개정

2026. 5. 18. 2차개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CP 리스크평가 운영지침

[시행 2026.5.18.] [CP운영지침 제2호 2025.5.18.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사항을 확인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분석·평가하여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경영 및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리스크의 식별, 분석, 평가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리스크 평가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및 리스크 추정에 대한 총체적 프로세스

2. 발생가능성

일어날 일의 기회(주어진 기간 동안의 확률 또는 빈도)

3. 결과의 영향

위법 행위로 인해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으로 영향을 준 피해

4. 리스크 처리

리스크를 완화하는 프로세스

제4조 (책임과 권한)

①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 평가 계획의 승인
2. 리스크 평가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의 제공
3. 리스크 평가 결과의 승인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리스크 평가 대상부서 및 참여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 부서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 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리스크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리스크 평가자 및 각 부서(본부·실·센터·부문·사업장)의 장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부서와 관련된 리스크 도출
2. 리스크 식별, 분석 및 평가
3. 리스크 평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4. 리스크의 효과성 평가 및 잔여 리스크 개선계획 수립 및 경감조치
5. 리스크 평가 결과 및 대책을 직원에게 주지

제5조 (평가 분야)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가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식별하고, 동 법령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리스크 평가 분야로 한다.

1.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한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분야
2. 회사의 협력업체, 대리점과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분야
3. 기타 당사의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분야

제6조 (일반사항)

① 연 1회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다음 연도 CP운영계획’에 리스크 평가 계획을 포함한다.

② 리스크 평가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평가 : 연 1회 이상

2. 수시 평가

가. 조직의 구조 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나. CP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파악, 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라. 기존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리스크를 검토할 경우

마.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③ 리스크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유업주식회사 본사 및 전 사업장

④ 리스크 평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평가가 사업장 내 모든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대상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2. 리스크 요인 파악은 팀원의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방식으로 진행하되 특히 팀장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발생가능성과 결과의 영향 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준법 기능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부서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4.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제7조 (평가 절차)

① 평가 준비

1. 각 부서는 해당 부서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서식1]준법경영 법규등록부를 통해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규 준수 의무를 [서식2]준법경영 의무등록부를 통해 파악한다.
2. 각 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리스크 평가 대상 부서로 선정한 [서식3]준법경영 리스크 평가 대상 부서 대장을 통하여 해당 부서가 평가해야 할 관련법규를 파악한다.

② 리스크 식별

1. 각 부서는 평가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가. 부서 규모와 구조 및 사업운영 영역

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세부 법령

다. 과거 회사에 발생한 공정거래 관련 사례

라. 법원 판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례

마. 동종업계 관련 사례

2. 각 부서는 위 1호에서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서식4]준법경영 리스크 평가서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한다.
3. 각 부서는 [서식2]준법경영 의무등록부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적용되는 법규 명칭 및 법규 조항, 법규 의무사항, 벌칙/벌금을 기재하고 관련 업무에 부서의 관련 업무를 기재한다.
4. 각 부서는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업무의 형태 또는 외형을 리스크란에 기재한다.

③ 리스크 분석

1. 각 부서는 [위반행위 : 리스크]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및 결과의 영향에 대하여 수준을 분석한다.
2. 리스크의 발생가능성(Likelihood)은 현장에서 위반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발생가능성 평가기준

점수	정의	평가 기준		
		빈도	설명	
1	매우 낮음	1회/3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수준	현재 ·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2	낮음	1회/1년	발생 확률이 낮은 수준	현재 · 향후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3	보통	1회/반기	발생 확률이 보통 수준	현재 · 향후 발생 가능성 보통
4	높음	1회/분기	발생 확률이 높은 수준	현재 · 향후 발생 가능성 높음
5	매우 높음	1회/월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수준	현재 ·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

3. 리스크의 결과의 영향(Consequence)은 경영활동에 미치는 피해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결과의 영향 평가기준

점수	평가 기준		
	피해 정도	예상 손실	비재무적 영향
1	매우 미약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판에 영향 거의 없음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영향 거의 없음 • 행정적 제재가 경고로 취해지는 정도 • 현업부서 자체 대응 가능
2	미약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판에 경미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정상적 수준에서 약간 지연되는 수준 • 행정적 제재만 취해지는 정도 • 사내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가능
3	보통	5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적 기사 노출 등 평판에 상당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 중 하나가 취해지는 정도 • 외부 변호사의 자문 필요
4	심각	1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방송사 노출 등 평판에 중대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행정적 제재 및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소송 필요
5	매우 심각	10억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매운동 및 거래중단 등 평판에 치명적 영향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침 • 행정적 제재 및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소송 필요

④ 리스크 평가

1. 각 부서는 리스크 위험수준을 [발생 가능성 × 결과의 영향]로 최소 1점 ~ 최대 25점으로 구성하며, 위험수준에 따라 위험성은 저위험 Low(1~8점), 중위험 Medium(9~16점), 고위험 High (17~25점) 3단계로 분류한다.
2. 리스크 위험수준 산정기준은 <표>3과 같다.

<표3> 리스크 위험수준 산정 기준 (= 발생가능성 * 결과의 영향)

발 생 가 능 성	5	5(L 등급)	10(M 등급)	15(M 등급)	20(H 등급)	25(H 등급)
	4	4(L 등급)	8(L 등급)	12(M 등급)	16(M 등급)	20(H 등급)
	3	3(L 등급)	6(L 등급)	9(M 등급)	12(M 등급)	15(M 등급)
	2	2(L 등급)	4(L 등급)	6(L 등급)	8(L 등급)	10(M 등급)
	1	1(L 등급)	2(L 등급)	3(L 등급)	4(L 등급)	5(L 등급)
점수	1		2	3	4	5
	결과의 영향					

3. 리스크 위험성은 <표>4와 같다.

<표4> 리스크 위험성

리스크 위험수준 결과 값	리스크 판정	리스크 위험성
17점 ~ 25점	High	고
9점 ~ 16점	Medium	중
1점 ~ 8점	Low (허용도 범위)	저

4. 각 부서는 리스크 위험수준 산정 결과가 9점 이상인 리스크에 대하여 현재 통제수단을 기록하고, <표5>에 따라 현재 통제수단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한다.

<표5> 통제수단 효과성 판정 기준

점수	효과성	기준
5점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관리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경영자 보고
4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 주기적인 감사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행 • 타 부서의 이중검토 실행 또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3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등의 문서화 절차 수립 (해당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 규정, 규칙, 지침, 강령, 매뉴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문은 기록물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2점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추가 통제수단이 없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가 조직내에 할당되어 있음 (해당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관리) • 관련 규정 등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중 또는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1점	매우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추가 통제수단이 없으며,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가 할당되어 있지 않음 • 통제의 필요성을 파악, 이해하고 있는 정도임

4. 각 부서는 <표3>에 따른 리스크 위험수준 산정 결과에 <표5>에 따른 효과성 판정 점수를 차감한 값을 잔여 리스크 점수로 산정하고, 잔여 리스크 점수가 중간위험 Medium “9점”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리대상 리스크로 결정한다.

제8조 (리스크 처리)

① 리스크 평가결과에 대한 경감조치

1. 각 부서장은 잔여 리스크 점수가 “9점”이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리대상 리스크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추가적인 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 내·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나. 강력한 징계(무관용 원칙)

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

라. 업무처리 전자화

마. 기록관리 강화

바. 업무 규정 또는 매뉴얼 정비

② 평가결과 타당성 검토 및 보고

1. 타당성 검토

가.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리스크 평가서의 평가결과 및 경감조치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나. 검토가 완료된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서별 리스크 평가서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은 각 부서 경감조치 계획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평가결과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최종적으로 리스크 평가결과 및 경감조치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서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 평가 결과 공지 및 효과성 파악

1. 리스크 평가 결과 관리대상인 리스크는 중점관리 리스크로 선정하여 항시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리스크 경감조치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결과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 리스크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경감조치를 실행 후 평가하여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 (기록)

구분	문서명	관리부서	보유기간
서식 1	준법경영 법규등록부	준법경영실	3년
서식 2	준법경영 의무등록부	준법경영실	3년
서식 3	준법경영 리스크 평가대상 부서 대장	준법경영실	3년
서식 4	준법경영 리스크 평가서	준법경영실	3년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2026년 5월 18일부로 전부 개정 시행한다.

(서식) 준법경영 법규 등록부

준법경영 법규 등록부

제정일 : 2026. (). ()
최근 개정일 : 2026. (). ()

☞ 아래 법률로 등록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함

법규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사내규정의 세부내용은 사내 인트라넷 **NOW 유리경영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llegible]

(서식) 준법경영 의무 등록부

준법경영 의무 등록부

제정일 : 2025. (). ()

최근 개정일 : 2025. (). ()

[illegible]

① ~ ⑨ : 의무 식별대장에서 가져옴

⑩ 분야 : 법규가 어떤 형태의 규제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작성 (법규 등록부의 분야와 일치하게 작성)

⑪ 등록일 : 의무 등록부에 등록한 날짜 작성

(서식) 리스크 평가대상 부서 대장

리스크 평가대상 부서 대장

제정일 : 2026.(). ()
최근 개정일 : 2026.(). ()

번호	번호	관리주체 부서	법규 명칭	분야	소관부처	관리체계	리스크 평가 대상 부서
주요 법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서식) 리스크 평가서

준법경영 리스크 평가서

[illegible]

리스크 평가 기준표

1. 발생가능성(Likelihood) 평가기준 (현장에서 위반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점수	정의	평가 기준		
		빈도	설명	설명
1점	매우 낮음	1회/3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수준	현재·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2점	낮음	1회/1년	발생 확률이 낮은 수준	현재·향후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3점	보통	1회/반기	발생 확률이 보통 수준	현재·향후 발생 가능성 보통
4점	높음	1회/분기	발생 확률이 높은 수준	현재·향후 발생 가능성 높음
5점	매우 높음	1회/월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수준	현재·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

2. 결과의영향(Consequence) 평가기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제재 수준을 평가)

점수	평가 기준		
	피해 정도	재산 손실	비재무적 영향
1점	매우 미약	1천만원 이하	• 평판에 영향 거의 없음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영향 거의 없음 • 행정적 제재가 경고로 취해지는 정도 • 현업부서 자체 대응 가능
2점	미약	1억원 이하	• 평판에 경미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정상적 수준에서 약간 지연되는 수준 • 행정적 제재만 취해지는 정도 • 사내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가능
3점	보통	5억원 이하	• 국지적 기사 노출 등 평판에 상당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 중 하나가 취해지는 정도 • 외부 변호사의 자문 필요
4점	심각	10억원 이하	• 메인 방송사 노출 등 평판에 중대한 영향 • 사업운영 및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행정적 제재 및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소송 필요
5점	매우 심각	10억원 초과	• 불매운동 및 거래중단 등 평판에 치명적 영향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침 • 행정적 제재 및 사법적 제재(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소송 필요

3. 부패리스크 위험수준 산정 기준 (=발생가능성 * 결과의영향)

발생가능성	5점	5(L 등급)	10(M 등급)	15(M 등급)	20(H 등급)	25(H 등급)
	4점	4(L 등급)	8(L 등급)	12(M 등급)	16(M 등급)	20(H 등급)
	3점	3(L 등급)	6(L 등급)	9(M 등급)	12(M 등급)	15(M 등급)
	2점	2(L 등급)	4(L 등급)	6(L 등급)	8(L 등급)	10(M 등급)
	1점	1(L 등급)	2(L 등급)	3(L 등급)	4(L 등급)	5(L 등급)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결과의 영향						

※ 부패리스크 판정

고유리스크 결과 값	리스크 판정	위험성
17점 ~ 25점	High	고
9점 ~ 16점	Medium	중
1점 ~ 8점	Low (허용도 범위)	저

4. 통제수단 효과성 판정 기준

점수	효과성	기준
5점	매우 높음	• 목표관리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경영자 보고
4점	높음	• 일상 / 주기적인 감사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행 • 타 부서의 이중검토 실행 또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3점	보통	• 관련 규정 등의 문서화 절차 수립 (해당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 규정, 규칙, 지침, 강령, 매뉴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공문은 기록물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2점	낮음	• 별도의 추가 통제수단이 없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가 조직내에 할당되어 있음 (해당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관리) • 관련 규정 등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중 또는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1점	매우 낮음	• 별도의 추가 통제수단이 없으며,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가 할당되어 있지 않음 • 통제의 필요성을 파악, 이해하고 있는 정도임

5. 잔여부패리스크 산정 기준 (=고유리스크 점수 - 통제수단 효과성 점수)

잔여리스크 결과 값	리스크 판정	추가 감감조치 필요성
17점 ~ 25점	High	필요
9점 ~ 16점	Medium	필요
1점 ~ 8점	Low (허용도 범위)	-